

1.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의3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주요사무를 조속기한 도래 전 타 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「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폐지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특이사항 없음

소방청훈령 제474호

[시행 2026. 8. 7.] [소방청 훈령 제474호] [발령 2026. 8. 7.]

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